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2975호

시행일자 2020. 1. 31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신종감염병증후군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
청구방법 안내

1. 관련근거: 대의협 제813-12868(2020.1.30.)
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85(2020.1.30.)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신종감염병증후군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)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중 <붙임>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작성 방법을 다음과 같이 수정안내하여 온바, 이를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님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수정내용 : 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급여대상 확대

- (기존) 확진, 의사환자, 조사대상유증상자 → (확대) 의사의 판단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

나. 수정사유 : 감염 확산 예방조치

* 수정사항을 제외한 내용은 기존과 동일

(확대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, 대응절차 등은 기존 대상자와 동일)

붙임 :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